

◎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

| 구분   | 내용   |
|------|--|
| 신청자격 | 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아래 조건을 갖춘 자<br>① 포항시,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거주자<br>②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<br>③ 무주택세대주<br>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<br>※ 직계존속(배우자 포함)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<br>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<br>※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 |
| 선정방법 |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.<br>-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<br>-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<br>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| 우선순위 | -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(포항시) 거주자가 우선  |
| 유의사항 | ※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(분양권·입주권 등 포함)<br>※ 소형,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<br>※ 피부양 직계존속이 요양시설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|

◎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가점 기준표

| 가점항목            | 가점상한 | 가점구분                 | 점수 | 가점구분          | 점수 | 확인할 서류 등 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|---|
| ①<br>무주택 기간     | 32   |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| 0  | 8년 이상~9년 미만   | 18 | • 무주택자에 한함.<br>• 주민등록표등본<br>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<br>•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<br>•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<br>※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1년 미만                | 2  | 9년 이상~10년 미만  | 20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1년 이상~2년 미만          | 4  | 10년 이상~11년 미만 | 22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2년 이상~3년 미만          | 6  | 11년 이상~12년 미만 | 24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3년 이상~4년 미만          | 8  | 12년 이상~13년 미만 | 26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4년 이상~5년 미만          | 10 | 13년 이상~14년 미만 | 28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5년 이상~6년 미만          | 12 | 14년 이상~15년 미만 | 30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6년 이상~7년 미만          | 14 | 15년 이상        | 32 |   |
| ②<br>부양 가족수     | 35   | 0명                   | 5  | 4명            | 25 | • 주민등록표등·초본<br>• 가족관계증명서<br>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<br>•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<br>(1) 만 18세 이상 ~ 만 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<br>(2) 만 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| 10 | 5명            | 30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2명                   | 15 | 6명 이상         | 35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3명                   | 20 | -             | -  |   |
| ③<br>입주자저축 가입기간 | 17   | 6개월 미만               | 1  | 8년 이상~9년 미만   | 10 | • 청약통장<br>(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)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6개월 이상~1년 미만         | 2  | 9년 이상~10년 미만  | 11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1년 이상~2년 미만          | 3  | 10년 이상~11년 미만 | 12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2년 이상~3년 미만          | 4  | 11년 이상~12년 미만 | 13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3년 이상~4년 미만          | 5  | 12년 이상~13년 미만 | 14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4년 이상~5년 미만          | 6  | 13년 이상~14년 미만 | 15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5년 이상~6년 미만          | 7  | 14년 이상~15년 미만 | 16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6년 이상~7년 미만          | 8  | 15년 이상        | 17 |   |
| 7년 이상~8년 미만     | 9    | -                    | -  |               |    |   |
| 총점              | 84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|   |

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

(A2블록) 1,597세대 / (A4블록) 595세대 - 총 2,192세대

(A2블록) 84㎡ A·B·C·D - 1,120세대 / 99㎡ A·B·C - 477세대

(A4블록) 84A·B·C - 595세대

문의 1811-0833

시행·시공  한신공영(주)



◎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유형 |             | 해당서류                 | 발급기준     |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| 추가<br>(해당자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필수서류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① 신분증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 이후 여권 : 여권정보증명서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②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 | 본인       |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③ 주민등록표초본            | 본인      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④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       | 본인      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<br>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| 본인       |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⑥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| 본인       |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 | 본인       |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   | ⑧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     | 본인 및 세대원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   | ⑨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 | 배우자      | 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<br>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   | ⑩ 복무확인서              | 본인       |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청약한 경우<br>-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   |
| 노부모부양<br>특별공급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①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 포함) | 피부양 직계존속 |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<br>※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‘전체 포함’으로 발급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②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| 피부양 직계존속 | 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<br>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③ 기타(가점 확인 서류)       | -        | •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<br>- 일반공급 당첨자(예비입주자)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|
| 제3자<br>대리인<br>신청 시<br>추가사항 | ○    |             | ①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       | 본인      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② 위임장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|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| ③ 신분증, 인장            | 대리인      |  |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23.)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 ※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(직계존·비속 포함),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  
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 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 
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  
 ※ 2005.07.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